#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59 발의연월일: 2024. 12. 13.

발 의 자: 박정현・김 윤・박홍근

이용우 • 박홍배 • 고민정

이광희 · 김동아 · 박희승

김남근 • 노종면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선포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해야 함.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지속된 위헌적인 계엄 당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상 당 시간 동안 해제하지 않았고,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의원 구금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경우 국무회의에서 해제 의결 이전이라도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범 으로 체포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계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도록 하여, 민주공화국의 입법부가 사법 권과 행정권이 제한되는 계엄 시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안 제11조제2항 등).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계엄 선포의 통고)"를 "(계엄 선포의 통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은 지체 없"을 "국회에 통고하는 것과함께 대통령"으로, "요구하여야 한다"를 "요구한 것으로 간주한다"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회의장은 계엄 통고를 받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등을 논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기 전까지 계엄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을 "중이라도"로, "체포"를 "회기 중에는 체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회가 계엄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생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등) ①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②
중일 때에는 <u>대통령은 지체 없</u>	<u>국회에 통고하는</u>
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u>요구하</u>	<u>것과 함께 대통령 요구한</u>
여야 한다.	<u>것으로 간주한다</u> .
<u>&lt;신 설&gt;</u>	③ 국회의장은 계엄 통고를 받
	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등을 논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생 략)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	②
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	
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u>&lt;단</u>	<u>단, 국</u>
<u>서 신설&gt;</u>	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기
	전까지 계엄의 효력은 정지된
	<u>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	<u>①</u> 중이라도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u>체포</u>	<u>회기</u>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중에는 체포
<u>&lt;신 설&gt;</u>	②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

된 경우라도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회가 계엄 등을 논의하기 위 해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즉 시 석방하여야 한다.